

이천 갈산 2차 현진에버빌 입주자모집공고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민영 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당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03. 6. 7)되어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됩니다.
- 거주지역별,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 및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 보증을 받은 아파트로 안심하고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공급 대상 및 공급 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 건축과-13794호(2008.04.2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597-3번지 외 11필지 ■ 대지면적 : 9,197.00 m²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10,15층 아파트 3개동 총 1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세대(3자녀특별공급포함) 9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공급 세대수	층수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면적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민영 주택	0	0	112.0385	90	1-15	84.8731	27.1654	112.0385	3.8784	31.4111	147.3280	42.7880
	0	0	127.1576	20	1-10	105.8395	21.3181	127.1576	4.8365	39.1690	171.1631	53.3580
	0	0	140.8304	30	1-15	115.9357	24.8947	140.8304	5.2980	42.9062	189.0346	58.4480
	0	0	160.7975	28	2-15	132.1449	28.6526	160.7975	6.0394	48.9098	215.7467	66.6200

- 공급금액 (단위 : 천원, VAT포함)

주택형	층별 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가격	건축가격	계		1회 (2008.07.21)	2회 (2008.10.20)	3회 (2009.01.20)	4회 (2009.05.20)	5회 (2009.08.20)	6회 (2009.11.20)	
						계약시							입주시 (입주예정일)
112.0385	1층	6	76,888	183,572	260,460	26,046	26,046	26,046	26,046	26,046	26,046	26,046	78,138
	2층	6	76,888	185,572	262,460	26,246	26,246	26,246	26,246	26,246	26,246	26,246	78,738
	기준층	72	76,888	190,572	267,460	26,746	26,746	26,746	26,746	26,746	26,746	26,746	80,238
	최상층	6	76,888	200,572	277,460	27,746	27,746	27,746	27,746	27,746	27,746	27,746	83,238
127.1576	1층	2	95,882	211,288	307,170	30,717	30,717	30,717	30,717	30,717	30,717	30,717	92,151
	2층	2	95,882	213,288	309,170	30,917	30,917	30,917	30,917	30,917	30,917	30,917	92,751
	기준층	14	95,882	219,288	315,170	31,517	31,517	31,517	31,517	31,517	31,517	31,517	94,551
	최상층	2	95,882	231,288	327,170	32,717	32,717	32,717	32,717	32,717	32,717	32,717	98,151
140.8304	1층	2	105,028	235,922	340,950	34,095	34,095	34,095	34,095	34,095	34,095	34,095	102,285
	2층	2	105,028	237,922	342,950	34,295	34,295	34,295	34,295	34,295	34,295	34,295	102,885
	기준층	24	105,028	244,922	349,950	34,995	34,995	34,995	34,995	34,995	34,995	34,995	104,985
	최상층	2	105,028	257,922	362,950	36,295	36,295	36,295	36,295	36,295	36,295	36,295	108,885
160.7975	2층	2	119,713	273,837	393,550	39,355	39,355	39,355	39,355	39,355	39,355	39,355	118,065
	기준층	24	119,713	280,837	400,550	40,055	40,055	40,055	40,055	40,055	40,055	40,055	120,165
	최상층	2	119,713	294,837	414,550	41,455	41,455	41,455	41,455	41,455	41,455	41,455	124,365

평형 환산방법	m ² x 0.3025 또는 m ² ÷ 3.3058
---------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전기실, 노인정, 주민공민공동시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공간을 총수로 적용하여 총·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총별 공급금액을 산정하였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이 지정하는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총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이며, 총.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경기도 인천시는 주택특기지역(2005.8.19)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됨.
- 당 사업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적용으로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3%를 특별공급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종합토지세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 할 예정임(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1순위자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 및 동일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 및 주택소유사실 포함]분 또는 2002.9.5 이후 청약관련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무주택 우선 공급 포함)이 제한(2순위로 청약가능)되며, 상기용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참조).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 제2항, 전용 85m² 이하 공급주택 90세대 중 3%이내(3세대)]

구분	112.0385㎡	127.1576㎡	140.8304㎡	160.7975㎡	계
공급세대	3	-	-	-	3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8. 6. 2(월) [10:00~12:00] /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6. 2(월) [14:00] /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대상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체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무주택세대주]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공급신청서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가 없는 경우 청약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장애인 인정증명서)없이 장애인 인증서,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으로는 청약신청 자격이 없음.
- 장애인 인정증명서는 거주지 해당 시·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므로 거주지 해당 시·구청 및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미달 또는 부적격 등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처리함.

2.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 전주택형 공급주택 168세대 중 3% 이내 (6세대)]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4.28)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에게 공급주택의 3%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함.
 - 단,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재당첨금지 적용자 제외)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와 당해 조건과 동일한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선정방법 : 3자녀이상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량의 3%를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일반공급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 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40%,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아래 공급세대수 참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 신청할 수 없음

• 3자녀 특별공급세대

공 급 면 적	112.0385㎡	127.1576㎡	140.8304㎡	160.7975㎡	합 계
경기도	2	-	1	-	3
서울특별시	2	-	-	-	2
인천광역시	1	-	-	-	1
합 계	5	-	1	-	6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6. 2(월) [10:00~12:00],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6. 2(월) [14:00],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추첨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 한 자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된 자는 특별공급에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사도 거주 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사·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사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1),(2):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건교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령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해당청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①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3. 일반공급

1) 공통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4.28) 현재 이천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4.28) 현재 이천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가능.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이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수도권 거주자(이천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천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이천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이천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차액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된 경우 포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1순위 청약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로 해당청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1항).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해당청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체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무주택 세대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4.28)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재당첨 금지 적용자 제외)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이천시·서울시 및 수도권	2008. 6. 2.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건본주택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및 추정일시: 2008.6.2(월) [14:00] 발표장소: 건본주택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포함]에 속한 분 추첨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 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 6. 3.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 : www.ap2you.com - 국민은행 모바일 : Mbank, kbank, Bankon 접수시간 : 08:3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08.6.12(목) [14:00] - 건본주택 신문개재: 2008.6.12(목) - 아시아경제 개재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대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이상인 분 '80.8.29.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85㎡초과 주택에 한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9.5.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분(상동)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불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순위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2008. 6. 4. (수)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1순위자중 상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단,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 				
3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8. 6. 5.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 - 시간 : 08:30 ~ 18:00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정항목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인 창구청약 가능 시간:09:30~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 가정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감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 ※ 가정항목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당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가정점수 산정기준표

가정항목	가정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

2. 청약가점제 적용 및 유의사항

- 2007. 9. 1 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 점 제	75%	50%
추 점 제	25%	50%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2007.9.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청약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3. 가정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

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한다]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의 2 또는 제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4.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가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 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5.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에관한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주택의 처분일예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6.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적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할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분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단,1년 미만인 분은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접수 방법

• 특별공급(3자녀 이상):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이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에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정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정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정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단, 1순위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각 지역별,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정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85㎡초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정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가정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상기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접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 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영업점 창구 접수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부금통장(제1·2순위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 예금인장(제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 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4.28)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주택형	금액	신청금 납부방법(영업점 창구 접수자에 한함)
청약신청금	전주택형	100만원	이천시 지역소재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공고 익영업일(2008. 6. 12)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일·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음)
-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단, 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은행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환불시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청약신청금 환불 위임 용) 1통, 인감도장, 위임장
- 제3순위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임의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당주택의 특별공급당첨자는 타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제한됨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 선정함(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p>입주자를 선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천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천제로 입주자 선정 <p>·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고,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이천시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신청자 포함)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천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추천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p> <p>·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p>
--	--

☐ 인터넷·ARS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당첨자발표 장소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 민 은 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 융 결 제 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당첨확인→주택별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청약센터→당첨확인
	이용기간	2008. 6. 12 ~ 2008. 6. 21 (10일간)	2008. 6. 12 ~ 2008. 6. 21 (10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1588-9999 (서비스번호 : 70)	☎1369(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및 시간	2008. 6. 12 ~ 2008. 6. 21 (10일간)	2008. 6. 12 ~ 2008. 6. 21 (10일간)
모바일	이용방법	· MBank(SK텔레콤) 접속→KBstarNet→모바일주택청약	-
	이용기간	2008. 6. 12 ~ 2008. 6. 21 (10일간)	-
휴대폰 문 자 서 비 스	대 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2008. 6. 12 (09: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 : 2008. 6. 17(화) ~ 2008. 6. 19(목) (3일간, 시간 : 10:00~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603-21번지 현진에버빌 주택전시관)
 (분양문의 TEL 031-637-6800)
 -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
 - 지정된 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됨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천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납부계좌

구 분	납 부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아파트 분양대금	국민은행	279601-04-105540	(주)현진(외1)	※ 입금시 동,호수,성명 필히 기재요망
발코니 확장금액 및 별도품목(옵션)금액	국민은행	549801-01-148054	(주)현진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생략] ·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등·초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의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주택소유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당첨자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지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 조건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단, 착오 기재한 청약가점항목 확인결과 최종 가점점수가 해당 주택형 당첨최저가점점수 이상인 경우 당첨자로 인정)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단, 추정방식에 의한 당첨자는 2세대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될 경우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금융결제원에서 5년이내 재당첨여부를 검색하고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소유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동일 세대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주변단지의 신축, 기존 건축물(현장 확인) 등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 및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인허권자나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 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상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입주예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부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색채와 계획은 이천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10년 1월 중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여러분이 직접 하자여부를 사전점검하는 행사를 실시(별도 안내문 통보 예정)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지속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산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청약시 일정기간동안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직원 임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당 아파트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개인별 총부채상환비율(DTI), 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등]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으며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약정된 분양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건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 별도계약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되며, 별도 계약(설치사항, 규격), 전시품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부 가구제품 및 가전제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옵션 품목임)
- 각종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학교, 지하철, 도로망 등)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97호(2005.12.7)]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및 비디오로 건본주택 내부 및 평면설계, 마감자재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팜플렛,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기타 홍보물 또는 사진, 연출용 시공부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일반분양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

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테리어 및 가구재배치를 통한 단위세대 평면의 질적향상을 위해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구조물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음. 또한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타워동 날개세대의 일조권이 구조적인 측면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소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각종 저층부 세대는 가로동 야간 조명 영향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음.
- 인허가상 또는 실시공사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체),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발코니 앞에 장식물이 추가 부착될 수 있고, 아파트 축벽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장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 확장세대는 확장형으로 표현된 견본주택과는 달리 공간이 다소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사시의 위치, 크기 및 사양은 풍동시험결과 또는 기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시내 환기창의 위치 및 개소도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형은 평면 및 형별 특성에 따라 청소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당초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에 공고할 예정임.
- 옥탑 경관조명 및 측면 로고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의 내부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와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재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 할 수도 있음.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본 아파트 시공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지형상 503동은 지하주차장과의 연결이 지하2층 주차장에서만 이루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로 인하여 도로, 공원, 주택건설 사업계획부지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원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오니,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사전 확인 바람.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 대한주택보증(주)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22008-101-0003000	₩ 36,456,49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 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제4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금액 및 별도품목(옵션)금액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위 :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별(㎡)	층별	발코니 확장공사비(A)	별도품목(옵션)비(B)	계약자 부담금액(A+B)	비고
112.0385	1,2층	14,220,000	4,120,000	18,340,000	
	기준층	13,920,000		18,040,000	
	최상층	14,050,000		18,170,000	
127.1576	1,2층	18,330,000	4,410,000	22,740,000	
	기준층	17,950,000		22,360,000	
	최상층	18,100,000		22,510,000	
140.8304	1,2층	19,700,000	4,390,000	24,090,000	
	기준층	19,300,000		23,690,000	
	최상층	19,460,000		23,850,000	
160.7975	2층	23,750,000	10,910,000	34,660,000	
	기준층	23,280,000		34,190,000	
	최상층	23,470,000		34,380,000	

- 자세한 확장내역 및 별도품목(옵션)은 견본주택의 각 주택형 내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별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로만 신청가능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 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비용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회사	선일건축사사무소(주)	(주)럭키기술단	(주)럭키기술단	(주)럭키기술단
감리금액	574,748,473원(VAT별도)	35,000,000원(VAT별도)	17,000,000원(VAT별도)	24,000,000원(VAT별도)

▣ 시행자 및 시공자

- 시행자 : 에스알(주)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8-23
- 시공자 : (주) 현 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1번지 에버빌타워

▣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 www.evervill.co.kr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603-21번지 현진에버빌 주택전시관
(분양문의 ☎ 031-637-68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